

# 미국 NCACS의 기관평가인증제 개혁과 시사점

이영학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책임연구원

## 1. 서론

2007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은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다. OECD/UNESCO 가이드라인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대학 자체(자체평가) 및 외부(제3자에 의한 외부 평가) 질 보장 체제를 갖추고, 질 보장과 관련된 활동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당 지역 또는 국제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6월중 마련한 관련 시행령(안)은 정보공시제 중심의 자체평가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OECD/UNESCO 권고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기관평가인증제(대학종합평가)는 15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평가자의 전문성이 낮으며,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비판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평가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북중부지역대학협의회(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Schools: NCACS)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학문적 질 향상 프로그램(Academic

Quality Improvement Program: AQIP)’라는 새로운 기관평가인증제 모형을 시범 적용하였고 2003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대교협은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기관평가인증제의 모형으로 NCACS의 AQIP모형에 근거하여 한국적 기관평가인증제 모형을 탐색해 왔다. NCACS의 AQIP는 우리정부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정보 공시, 자체평가 강화,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종합체제화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기관평가인증제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NCACS의 기관평가인증제의 발전과정과 AQIP를 중심으로 한 평가인증모형 탐색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미국의 기관평가인증제 현황

미국에는 현재 4,000여개 이상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난립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의 자기규제 방식을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 해오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후반 대학의 난립과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에 따라 대학의 외부평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1885년 뉴잉글랜드지역대학협의회(New England Association of College and Secondary Schools: NEACS)가 결성되고, 이후 5개

지역협의회가 설립되었다.

6개의 지역협의회 중에서 NCACS가 1913년에 시작한 평가인증(Accreditation)활동이 대학평가의 역사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NCACS는 1910년부터 기금, 장서 수, 학과 수, 학급규모, 졸업에 필요한 단위 수 등 12개의 구체적인 평가인증을 위한 최저기준을 개발하고, 1913년에 이 기준에 의해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후 5개 지역협의회가 1952년까지 연차적으로 기관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다. 2008년 현재 6개의 지역평가 인정기구 내에는 8개의 기관평가인증위원회(Commission for Accrediting)가 설치되어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평가인정기구들은 고등교육질인증협의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와 미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USDE)의 승인을 받아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는데, 8개 기관평가인증위원회는 모두 CHEA와 USDE의 승인을 받고 있다. CHEA와 USDE는 직접 평가를 하지 않고 이들이 승인한 대학평가 기구를 통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간접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USDE가 승인하는 기관평가 인정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과 고등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생지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반면, CHEA가 승인하는 기관평가 인정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과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위와 자격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평가결과를 서로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

### 3. NCACS의 기관평가인증제

#### 가. 기관평가인증제 발전 과정

NCACS는 6개 지역협의회 중에서 최초로 기관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기관평가인증제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도입한 새로운 평가시스

템인 AQIP는 기관평가인증제의 새로운 모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NCACS는 1970년대 중반 평가인증편람(Handbook of Accreditation)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이 편람에서는 자체평가가 자료수집 및 질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정량적 자료보다는 정성적 자료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 결과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직업학교, 특수목적 학교들이 미국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협회의 회원들의 수가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평가준거를 정기적으로 개편하였다. 주요한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1년 평가인정을 위한 4개의 평가준거와 평가인증 예비자격 획득을 위한 준거를 도입하였다.
- 1987년 회원대학들의 핵심적 특징을 모아서 회원대학이 되는데 필요한 일반 요구사항(General Institutional Requirements : GIRs)를 재구성하였다.
- 1997년판 평가인증 편람에서 5개의 평가준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준거들이 여러 기관들의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들을 제시하는 한편 대학이 평가준거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예시(Examples of Evidence)들을 최소한도로 제시하였다.
- 1999년부터 3년 동안 150만불의 기부금을 이용하여 질 향상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대안적인 평가인증 과정을 개발하였다.
- 2003년 전통적인 평가인증을 Program to Evaluate and Advance Quality (PEAQ)로 새로운 대안적 평가인증과정을 Academic Quality Improvement Program(AQIP)로 명명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선택하게 하였다.
- 2003년판 평가인증 편람에서 현재 활용중인 PEAQ 평가준거 체계(평가준거, 평가준거 진술, 핵심 평가사항, 증거의 예시(Examples of Evidence))를 제시하

였으며, 증거의 예시들을 더욱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 나. 기관평가인증제의 유형

NCACS는 1913년에 6개의 기관평가 인정기구 중 가장 먼저 기관평가인증제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기구 내 고등학습위원회(Higher Learning Commission: HLC)가 기관평가인증제를 담당하고 있다. HLC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관평가인증제를 개선하는 한편 다른 기관평가 인정기구보다 진보된 평가인증시스템을 개발 적용하여 미국 내 기관평가인증제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CACS가 시행하는 기관평가인증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인증평가 예비자격 획득 프로그램(Candidacy Program)
- 질 평가 및 촉진 프로그램(Program to Evaluate and Advance Quality: PEAQ)
- 학문적 질 향상 프로그램(Academic Quality Improvement Program: AQIP)

대학설립 후 대학은 인증평가 예비자격 획득을 위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평가는 24개의 평가준거에 기초하여 시행되며 평가인증 예비자격을 획득할 경우 일반적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해에 PEAQ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는다. 예비자격의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대학은 2년마다 방문점검을 받는다. PEAQ에 의해 평가인증을 받으면 10년 후에 다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대학은 PEAQ 또는 AQIP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최초의 평가인증은 PEAQ를 통해 획득하며, 평가인증된 이후에는 PEAQ 또는 AQIP 중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QIP는 NCACS에서 개발되어 NCACS에서만 시행되는 기관평가인증제의 대안적 프로그램이다.

## 다.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

NCACS 기관평가인증제의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는 5개의 중요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평가준거는 평가준거진술, 핵심평가요소, 증거예시 등 세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평가준거진술(Criteria Statement): 평가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속성을 기술하고 있다.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준거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에 제재가 주어질 수 있다.
- 핵심평가요소(Core Components): 평가준거별로 핵심평가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기관은 핵심평가요소 각각에 대하여 충족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 증거예시(Examples of Evidence): 핵심 평가요소를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학이 설정할 수 있는 증거(평가지표)의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시들이므로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며, 대학은 자신의 목적과 사명에 근거하여 다른 증거들을 설정할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제의 평가준거는 다음과 같다(지면 관계상 평가준거진술 및 핵심평가요소는 평가준거 1에 대해서만 제시하였고, 증거예시들은 첫 번째 핵심평가요소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다).

[평가준거 1] 대학의 목적 및 통합성(Mission and Integrity)  
평가준거진술 : 대학은 위원회, 이사회, 교수, 직원, 학생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핵심평가요소

- 1a : 대학사명은 명확해야 하며 대학의 책무를 공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 증거예시

- 대학사명은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 대학사명은 고등 학문 기준에 적합한 강력한 책

무를 가지고 있다.

- 대학사명, 교육목적, 비전 등은 대학이 봉사하고자 하는 다양한 내적/외적 고객을 포함하고 있다.

- 1b : 대학사명에서 대학은 학습자, 고객, 봉사하고자 하는 사회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1c : 사명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충분하여야 한다.
- 1d : 대학 이사회와 관리자 조직은 사명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리더십과 협동심을 가져야 한다.
- 1e : 대학은 적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준거 2] 미래에 대한 대비(Preparing for the future)

[평가준거 3] 학생의 학습 및 효과적인 수업(Student Learning and Effective Teaching)

[평가준거 4] 지식의 취득, 탐구, 적용(Acquisition, Discovery and Application of Knowledge)

[평가준거 5] 참여 및 봉사(Engagement and Service)

NCACS의 평가준거 모형은 PEAQ와 AQIP 모두에 적용된다. 즉 PEAQ와 AQIP는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절차 및 방법상의 차이이며 평가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평가준거는 하나이다. PEAQ에서는 자체평가 시 적용하는 평가준거와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는 구성 형태가 동일하다. AQIP는 두 평가준거의 구성에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에 맞추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AQIP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준거에 의해 작성된 자체평가보고서와 관련 활동 등을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에 비교하여 평가한다.

참고로, NCACS의 평가준거가 평가준거(Criteria)인지 평가기준(Standards)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준거(criteria)는 평가활동, 범위 및 영역 등 평가대상의 내용을 대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standards)은 평가 대상의 바람직한 달성 정도나 성취 수준에 대한 판단 근거로써 평가 대상의 바람직한 수준이나 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평가준거 진술은 사실상 평가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WASCO를 비롯

한 많은 지역의 기관평가인증제에서는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 라. PEAQ 평가모형

PEAQ 평가모형은 대부분의 평가인증제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 자체평가 → 외부의 현지방문평가 → 평가결과 보고서 및 판정의 절차로 진행된다. 피평가대상 대학은 자체평가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대학에 가장 효과적인 자체평가의 방법을 제안한다. 자체평가수행계획서에는 대학이 설정한 평가준거 모형도 포함하며, 검토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사명과 교육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 가장 적절한 평가준거 모형을 제안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NCACS에 제출한다. NCACS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대학을 현지방문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NCACS에 제출한다. NCACS의 평가인증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의 평가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다른 지역의 기관평가인증제와 마찬가지로 10년이다.

PEAQ에 의한 자체평가 평가준거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의 사명과 목적에 따라 개별대학 각각의 평가준거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최상위 단계인 평가준거진술과 차상위 단계인 핵심평가요소는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거(평가지표)는 대학이 자신의 목적과 사명에 근거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준거진술과 핵심평가요소는 비교적 포괄적이고 모든 대학에 해당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 개별 대학의 특수성은 증거를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 이전에 대학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평가준거 모형을 설정하고, NCACS의 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와 협의의를 통해 승인받은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준거 설정 방법은 다른 지역의 기관평가인증제 시행 기구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부지역대학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의 경우 제안서검토위원회(Proposal Review Committee)에서 대학이 설정한 평가준거에 대해 검토하고 대학의 사명과 목적에 가장 적합한 평가준거 모형을 설정하도록 돕고 있다.

## 마. AQIP 평가모형

### 1) 평가 방법

AQIP의 시행목적은 평가인정 수준을 상회하는 대학의 경우 최소기준의 달성을 평가하는 기관평가인정제에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하여 이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대학의 질 향상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질 향상 프로그램인 동시에 질 인증 프로그램이다. AQIP는 TQM(Total Quality Management), CQI(Continous Quality Improvement), Six Sigma, ISO9000, 국가품질상(national quality award)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대학은 선택적으로 AQIP 또는 PEAQ에 참여할 수 있으며, AQIP에 참여한 대학은 6년 동안 NCACS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7년째 되는 해에 활동 결과 및 평가준거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판정받는다. 이러한 활동과 자료들은 AQIP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는다. 2008년 6월 현재 180여개 대학이 AQIP에 참여하고 있다. NCACS는 타 지역의 대학협의회에 소속된 대학들에 대해서도 AQIP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단순히 해당 대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질인증과는 무관하다.

AQIP는 다양한 하위과정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핵심적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전략적 포럼(Stratgy Forum), 실행사업(Action Projects), 연간갱신(Annual Update), 포트폴리오(Systems Portfolio), 업적평가(Systems Appraisal), 질 점검(Quality Checkup). 이러한 하위과정들은 주기 내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 [매년]포트폴리오(Systems Portfolio) ↔ 실행사업(Action Projects): AQIP에 참여하는 대학은 매년 3개~4개의 실행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실행사업들은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AQIP의 실행사업 목록에 축적된다. 또한 AQIP가 제공한 9개의 영역에 대하여 포트폴리오를 수집하고 갱신해야 한다.
- [4년]전략적 포럼(Stratgy Forum) ↔ 업적평가(Systems Appraisal): 4년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한다. 포트폴리오는 AQIP에서 제공한 9개 영역의 평가준거에 따라 4년 동안 대학이 수행한 실적을 정리한 자체평가보고서로서 실행사업들의 결과도 포함한다. 포트폴리오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책자로도 발간한다. 업적평가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대학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행위를 수립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며, 아울러 실행사업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 [7년]질 점검(Quality Checkup) ↔ 평가인증 재확인(Reaffirmation of Accreditation): 7년마다 대학이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를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AQIP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대학을 현지방문하여 대학이 지난 6년 동안 AQIP에 제출한 자료들과 포트폴리오의 내용이 정확한지와 NCACS가 제시한 평가인증준거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대학은 별도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 2) 자체평가의 평가준거

AQIP는 모든 조직은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쾌하고 투명해야 하며, 제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대학은 학생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학생의 학습을 돕는 한편 대학의 교육목적을 성취해

야 한다. 중간 부분은 대학에 대한 요구들을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기능이다. 아울러, 대학의 효율적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모형에 따라 AQIP는 9개 영역의 평가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9개 평가준거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며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9개 평가준거 각각에 대해서는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의문문의 형태(예: 당신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로 제시하고 있다. 점검해야 할 항목들은 평가준거별로 상황(Context), 과정(Processes), 결과(Results), 증진(Improvement)의 4개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AQIP의 평가준거는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평가기준)와 구성체계가 다르다. AQIP의 평가준거가 9개 영역으로 구성되는 반면 평가인증을 위한 준거는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AQIP에 참여하더라도 평가인증은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AQIP의 평가준거와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는 <표 1>과 같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AQIP에 참여하는 대학이 AQIP 평가준거에 따라 자체평가를 하더라도 평가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준거의 적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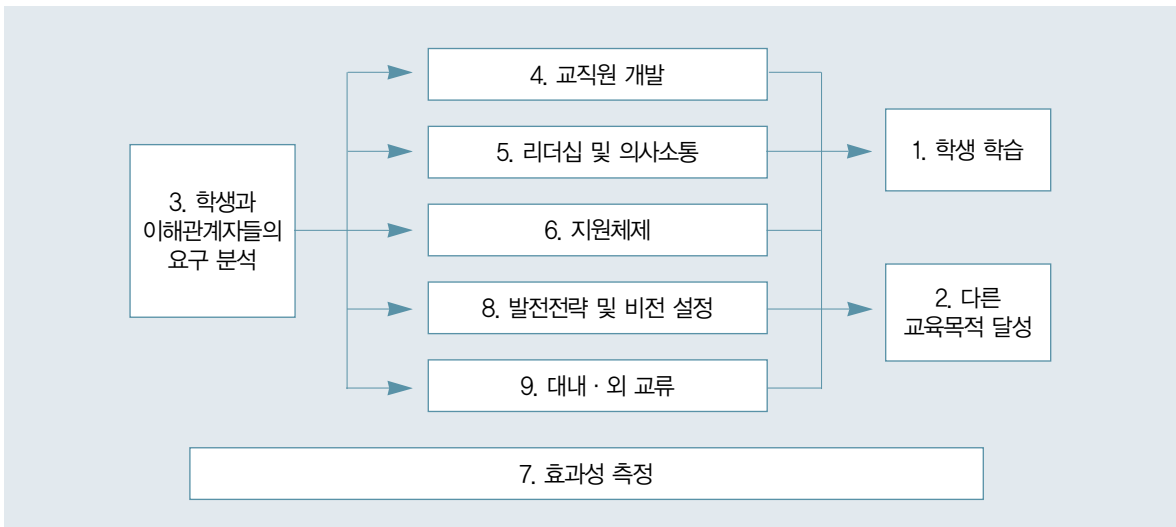


그림 1. AQIP 평가준거 모형

\* 주: 번호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AQIP의 평가준거 번호를 따른 것임.

\* 출처: NCACS(2003). Handbook of Accreditation(3rd ed.), p.6.2-1, NCACS.

표 1. AQIP 자체평가 평가준거와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와의 관계

평가인증을 위한 평가준거	AQIP 자체평가 평가준거								
	1	2	3	4	5	6	7	8	9
대학의 목적 및 통합성	√	√	√		√			√	
미래에 대한 대비				√		√	√	√	√
학생의 학습 및 효과적인 수업	√		√		√	√	√		
지식의 취득, 탐구, 적용	√	√	√	√		√			
참여 및 봉사		√		√	√		√		√

\* 출처: NCACS(2003). Handbook of Accreditation(3rd ed.), p.6.2-3, NCACS.

## 4. NCACS 기관평가인증제 개혁의 시사점

NCACS는 새로운 기관평가인증제의 모형으로 AQIP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모형은 기존 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대안으로 개발되었으며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질 관리를 돕는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NCACS의 AQIP는 향후 우리나라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AQIP는 대학의 제반 사항에 대한 체계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를 강조한다. 이러한 방침은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11조2항 설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의 자체평가 관련 규칙(안)은 50여개 정보공시제 항목에 대한 자체평가만을 강제할 뿐이며 나머지 부분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성과지표 위주의 정량적 평가준거에 의한 평가는 대학을 정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평가는 대학의 종합적 질 관리 체제로서 대학교육전반에 대한 질 평가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AQIP는 정보공시, 자체평가, 외부평가,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수립이 하나의 종합적 시스템에서 진행된다. 대학은 종합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AQIP는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다. 평가주기의 마지막 해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대학이 외부 컨설팅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학이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체평가는 정보공시제 항목에 대한 평가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별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관평가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학의 질 관리 대상이 제한적이고 각 활동들이 분리되어 있어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질을 관리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시제, 자체평가, 외부평가, 발전계획 수립 등 기관의 질 관리와 관

련된 제반 활동을 통합 체제로 구성하여 효과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AQIP는 TQM, IQC, ISO9000 등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질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기관평가인증제(대학종합평가)는 특정 시기에 대학의 역량을 집중하여 평가인증을 받고, 다음 평가인증 시까지는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QIP는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모형으로 도입되었으며 대학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증진 활동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제2주기 기관평가인증제를 종료하고 새로운 주기의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새로운 기관평가인증제의 기본 모형으로 AQIP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AQIP는 제3자에 의한 다양한 외부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4년째에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해인 7년째에는 외부 전문가가 대학을 현지 방문하여 평가인증준거의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 내지 컨설팅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고 외부의 시각에서 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체평가와 함께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는 의무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AQIP의 자체평가 및 제3자 외부평가는 NCACS에 의해 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보공시, 자체평가, 외부평가 등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정부 관련 조직이 다양화된다면 고등교육의 질 관리 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자체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자체역량이 충분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기관평가인증제를 추진해 온 대학교협의 평가관련 조직을 개편하여 '대학의 자체평가 지원 및 기관 인정기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AQIP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적에 근거하고 있다. AQIP의 관련 위원회는 대학이 스스로 설정한 사명과 교육목적에 근거하여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며, 최종적인 평가인증 여부는 이러한 활동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따라

서 AQIP의 모든 과정에서 대학의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PEAQ에서도 평가준거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 설정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체평가도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대학이 스스로 평가준거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이 설정한 평가준거에 대한 자문 기능이 명문화되지 않아 일부 대학에 있어서 ‘평가준거 흉내내기’가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5. 결론

정부는 현재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의 고등교육평가와 관련된 시행령들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을 마련함에 있어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고등교육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고등교육평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자율에 대한 책무성’이다. 새로운 대학평가 시행의 출발점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 그리고 대학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대학평가 정책이 대학의 책무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 혹 지나치게 대학의 자율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관평가인증제는 프로그램평가인증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문분야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정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학문분야의 질은 대학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프로그램평가인증제는 주로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평가인증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문분야에 대한 질은 기관평가인증제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평가인증제는 고등교육 전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객관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에 따른 제3자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 · 고 · 문 · 헌

- European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2005), "Standards and Guideline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NQA.
- Miami Univ.(2005). "Miami University Accreditation self-study report", Miami Univ.
- Missouri Western State University(2007). "MWSU Systems Portfolio" (<http://www.missouriwestern.edu/portfolio/aqipportfolio/>), Missouri Western State University.
- NCACS(2003). "Handbook of Accreditation(3rd ed.)", NCACS.
- NCACS(2007). "Introduction to AQIP", NCACS.
- NCACS(2008). AQIP 홈페이지(<http://www.aqip.org>).
- NCACS(2008). NCACS 고등교육평가인증제 홈페이지(<http://www.ncahlc.org>).
- OECD(2005), "Guidelines for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OECD.
- UC Berkeley(2002). "UC Berkeley Preparatory Review Report", UC Berkeley.
- WASC(2003). "Handbook of Accreditation", WASC.
- 이병식, 채재은(2006).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교육행정학연구, 24권1호, pp.267~288, 한국교육행정학회.
- 이영학(2007). "대학 특성 반영 기관평가인증제 준거 모형 구안",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 허귀진(2005). "한국 · 미국 · 일본 3국의 기관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필 · 자 · 소 · 개

### 이영학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중앙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평가, 대학교육과정 및 문화이다.